

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,
- 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
- 시설규모 : 23㎡(월곡종합사회복지관 2층, 사무실)
※ 사무실외 기타 시설은 복지관과 공동 사용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프로그램실(한글교실, 컴퓨터교실 등)
- 인력운영 : 5명(센터장 1명, 과장 1명, 대리 2명, 사회복지사 1명)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0. 1. 1. ~ 2022.12.31.)

○ 위탁업무

-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 일체
- 노무, 법률, 생활 등 상담지원
- 한글·컴퓨터 교육 등, 의료지원
- 문화체험 행사 등

○ 소요예산 : 253,011천원('19년도)

- 산출근거 : 인건비 171,576천원, 운영비 11,571천원, 사업비 69,864천원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없음(재위탁사업 비대상)

다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- 다양한 기관(병원, 경찰서, 법률사무소, 노무사, 봉사자, 종교단체 등)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·재위탁 추진계획
(외국인다문화담당관-5679, 2019.5.9.)

※ 작성자 :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진희원 (☎ 2133-5078)